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80100740]

[www.dahnworld.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8. 12. 1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 03. 08.]

[단월드]

정 보 공 개 서

[(주)브레인트레이닝센터]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브레인트레이닝센터]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논현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2-2016-3051]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2-2016-3055]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프랜차이즈팀 041-620-6905]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브레인 레이닝 센터	단월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논현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2.08.29	1993.03.01	정배선	02-2016-3051	02-2016-3055
	법인등록번호	161511-0011290	사업자등록번호	215-81-3757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이사	정배선	단월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배선	02-2016-3051	02-2016-3055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내이사	김세화	단월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배선	02-2016-3051	02-2016-3055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내이사	안경진	단월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배선	02-2016-3051	02-2016-3055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내이사	고훈경	단월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배선	02-2016-3051	02-2016-3055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감사	심남숙	단월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논현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배선	02-2016-3051	02-2016-305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단월드]이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단월드		단학은 한민족 전통의 심신수련법이며, 뇌호흡은 단학을 현대 뇌과학을 접목해서 개발된 뇌 개발법입니다.
상 호	단월드 00센터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 450009090
	단월드		서비스표 출원번호 : 4120060032068
	HSP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1175410000
	뇌파진동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1681910000
	수승화강 水昇火降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1470310000
	HSP장생보법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1664560000
	丹無道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1532960000
	DAHNMUDO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1537350000
광 고		HSP 미소의 손을 흔들며 웃고 있는 이 캐릭터는 세상에 건강과 행복과 평화를 전하며, Health의 'H'와 Smile의 'S'와 Peace의 'P'를 딴 HSP는 세상의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단월드의 비전을 상징합니다.	
그 밖의 영업표지	 Healing Martial Art DAHNMUDO  단무도    성공과 깨달음의 뇌교육무예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그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65,272,249	59,144,189	6,128,060	26,292,129	-1,021,645	1,046,301
2022년	56,938,571	55,499,678	1,438,893	24,317,117	-2,331,882	-5,375,999
2023년	56,547,803	59,754,697	-3,206,893	20,883,840	-3,818,583	-4,860,122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정 배 선	대표이사	2024.01.02~현재	(주)단월드 대표이사	회사 전반적 경영
	김 세 화	사내이사	2014.01.17~현재	(주)단월드 이사	회사 전반적 관리
	고 훈 경	사내이사	2011.04.19~현재	(주)단월드 이사	회사 전반적 관리
	안 경 진	사내이사	2011.04.19~현재	(주)단월드 이사	회계업무
	심 남 숙	감사	2011.04.19~현재	(주)단월드 감사	감사업무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4	1	33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는 아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당사의 직영점 및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권리자로부터 통상사용권을 부여 받았으며, 당사는 귀하에게 다음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칭	등록여부(일자)	등록번호	등록권리자	등록만료일
 (상품분류 제16,41류)	등록(2004.01.14.)	4500090910000	비알 컨설팅 인코퍼레이티드	2024.01.14
단월드 (상품분류 제41류)	등록(2009.01.14.)	4101800520000		2029.01.14
HSP (상품분류 제41류)	등록(2005.06.15.)	4101175410000		2025.06.15.
뇌파진동 (상품분류 제41류)	등록(2008.06.09.)	4101681910000		2028.06.09.
수승화강 水昇火降 (상품분류 제41류)	등록(2007.04.04.)	4101470310000		2027.04.04.
HSP장생보법 (상품분류 제41류)	등록(2008.05.08.)	4101664560000		2028.05.08.
 (상품분류 제41류)	등록(2006.02.16)	4101279760000		2026.02.16.
 (상품분류 제41류)	등록(2006.02.16)	4101279730000		2026.02.16.
HSP법칙 (상품분류 제41류)	등록(2006.10.31)	4101395590000		2026.10.31.
HSP용천지압 (상품분류 제41류)	등록(2008.05.08.)	4101664550000		2028.05.08.
단무도 (상품분류 제41류)	등록(2007.08.20.)	4101532960000		2027.08.20.
DAHNMUDO (상품분류 제41류)	등록(2007.08.20.)	4101537350000		2027.08.2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표(특허)의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단월드] 가맹사업 현황

1. [단월드]를 시작한 날 : 2009년 2월 19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1993년 03월 01일)

2. [단월드]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단월드	단월드	차동훈	2009.2.19~2009.3.16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7-20
(주)단월드	단월드	우종무	2009.3.17~2011.4.1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7-20
(주)단월드	단월드	박종필	2011.4.11.~2014.1.17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7-20
(주)단월드	단월드	김세화	2014.1.17.~2024.1.09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7-20
(주)브레인 트레이닝 센터	단월드	정배선	2024.1.09. ~ 현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7-20

3. [단월드] 업종

영업표지	업종	
단월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스포츠관련	기수련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종인 [단월드]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89	21	168	173	20	153	156	17	139
서울	37	3	34	33	3	30	29	3	26
부산	17	2	15	14	2	12	13	2	11
대구	11	-	11	10	-	10	10	-	10
인천	1	-	1	6	-	6	5	-	5
광주	6	1	5	6	1	5	5	1	4
대전	7	1	6	7	1	6	6	1	5
울산	12	2	10	7	2	5	5	1	4
세종	1	-	1	1	-	1	1	-	1
경기	35	2	33	32	2	30	30	2	28
강원	5	1	4	5	1	4	5	1	4
충북	6	-	6	6	-	6	5	-	5
충남	6	2	4	6	2	4	6	2	4
전북	9	1	8	8	1	7	6	1	5
전남	3	-	3	2	-	2	2	-	2
경북	13	2	11	11	1	10	11	1	10
경남	16	3	13	15	3	12	14	2	12
제주	4	1	3	4	1	3	3	-	3

5. 최근 3년간 [단월드]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증감
2021	23	0	2	0	0	21	-2
2022	21	0	1	0	0	20	-1
2023	20	0	3	0	0	17	-13

6. [단월드]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단월드]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작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평균 매출액						비고
		매출액		상한		하한		
		매출액	3.3㎡	매출액	3.3㎡	매출액	3.3㎡	
전체	17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산정 불가
서울	3							
부산	2							
대구	－							
인천	－							
광주	1							
대전	1							
울산	1							
세종	－							
경기	2							
강원	1							
충북	－							
충남	2							
전북	1							
전남	－							
경북	1							
경남	2							
제주	－							

* 당사는 2019년부터 가맹점의 매출액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어 기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맹점 출점 정책상 점포의 면적기준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평균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이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부가세 신고자료를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7	4,612일(12년 8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2023년]에 [단월드]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255,216	255,216	-	
광고	소계	-	255,216	255,216	-	
	비공개	비공개	255,216	255,216	-	
					-	
					-	
					-	
					-	
판촉	소계	-	0	0	-	
	비공개	비공개	0	0	-	

11. 가맹금 예치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 상품명	프랜차이즈 보증보험	-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단월드	-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사업 개시일	-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예치가맹금 범위 내	-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30일 정도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단월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6,000]만원(기준 평수 : 99㎡, 단위: 만원, VAT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집기·비품, 교재, 도복, 인허가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VAT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200	계약체결일	영업개시 이전 계약해지	· OPEN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매뉴얼 및 인력·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 OPEN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육비	1,500	계약체결일	교육개시 이전 계약해지	· 교육개시 전 : 전액 반환 · 교육개시 후 : 반환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만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1,000 (VAT없음)	계약 체결일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2,7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귀하는 아래의 예치가맹금을 당사에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단위: 만원)
합계	2,700
가맹비	200(VAT포함)
교육비	1,500(VAT포함)
보증금	1,000(VAT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

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평수 : 99㎡, 단위: 만원, VAT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 당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	[3,300]	110	-		-
인테리어	가맹본부	3,300	110	계약시	자재 구입 및 공사시작 전 계약취소	자재 구입 및 공사시작 후에는 실비가 발생하므로 반환 불가
지원물품	가맹본부	무료지원	-	무료지원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점포의 임대비용, 집기·비품, 교재, 도복 등의 비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하는 경우, 귀하는 인테리어의 관리 감독 및 실비의 대가로 3.3㎡당 110만원(VAT 포함)의 감리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래의 교육기준(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 소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브레인 트레이너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 - 학력 : 고졸이상 - 나이 : 만 23세이상~만 59세이하 - 활동성 간염보균자, 허리 디스크 수술경험자, 과거 혹은 현재 질병으로 간질, 신장질환, 심혈관계질환, 뇌부위, 만성질환, 장질환등 특정한 질병 혹은 수술 경험이 있는자, 신용불량자의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	가맹본부의 지도사범 교육을 받은 자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 - 학력 : 고졸이상 - 나이 : 만 23세이상~만 59세이하 - 활동성 간염보균자, 허리 디스크 수술경험자, 과거 혹은 현재 질병으로 간질, 신장질환, 심혈관계질환, 뇌부위, 만성질환, 장질환등 특정한 질병 혹은 수술 경험이 있는자, 신용불량자의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단월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위 표에는 귀하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내역 중 점포의 임대비용, 집기·비품, 교재, 도복 등의 내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8) 가맹금은 계약체결일에 완납하여야 하며,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만원, VAT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료	가맹본부	실비	광고 시행 전	광고 실시 전	전국광고를 시행할 경우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광고 시행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전액 반환	교육 개시 후에는 반환 불가
로열티	가맹본부	10	매월 말일	지급방식	로열티는 후불형식으로 지급하므로 반환 불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1)	가맹본부	협의하여 결정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변경 전	간판을 변경한 후에는 반환 불가
점포 환경 개선 비용	가맹본부	본사 부담외 금액	-	-	VII.-1.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액 연 9%	-	-	가맹계약서 37조 참조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 당사는 로열티 납부 형태이므로 차액가맹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

1)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간판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재고관리·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재가맹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가맹비는 갱신 및 재계약 당시의 신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게 지급하는 가맹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동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가맹비는 계약을 연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금전이므로 계약이 연장된 후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

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권을 이전받는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최초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VAT포함)

구분	금액	비고
가맹비	면제	-가맹점사업자의 잔존 계약기간 보장
교육비	1,500	-양수인은 양수도 당시의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이행보증금	1,000(VAT없음)	당사에 지급하여야 함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 시안과 가맹본부만의 고유 외장 인테리어 등의 영업표지를 영업장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 가맹계약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회원DB를 당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⑥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 정산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⑦ 가맹점사업자는 귀하의 회원이 인근 가맹점 또는 직영점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의 불편 및 중도해지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당사가 정한 필수 공급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2023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거래액의 %)	금액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3년 기준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거래액의 %)	금액	비고
해당없음	-	-	-	-	-
계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월회비(1개월)	당사가 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통일성 및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월회비(3개월)		
월회비(6개월)		
월회비(12개월)		
골드회원 (일반)		
골드회원 35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하한	상한		
월회비(1개월)	60,000	100,000	사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공지	2010.1월1일 기준
월회비(3개월)	180,000	300,000		"
월회비(6개월)	360,000	600,000		"
월회비(12개월)	720,000	1,200,000		"
골드회원(일반)	4,500,000			
골드회원350	3,500,000			

[월회비의 책정은 지역의 경제사정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운영되고 특정 유형의 회원과 가족에게는 소정의 할인혜택이 적용되므로, 가맹점은 소속지역 및 가맹본부의 회비체계에 따라 운영됩니다.]

4.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 일반인에게 뇌교육, 기체조, 호흡, 명상 등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 ○ 동일업종의 가맹본부	단월드	-

⇒ 귀하의 영업지역에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사의 [단월드]와 동일한 업종의 브랜드를 추가 입점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및 방법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인구1만명 당 1개소)를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배타적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단월드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해당없음.	해당없음.	0%	0%

⇒ 당사는 2019년부터 가맹점의 매출액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어 기재하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

[단월드]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 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6조 제2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6조 제2항
○ [단월드]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6조 제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6조 제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제32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의 변경 사항(명의변경, 점포 규모 및 소재지 변경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거나 매출보고 등을 허위를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업종을 영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취급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뢰를 오인 내지 훼손할 수 있는 그 외 교육프로그램을 취급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없이 서비스의 판매가를 변경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유니폼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2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 [계약 해지 사유 ②]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관련법 제정·개정 등에 따른 경우	제39조 제2항
○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회계정산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양수인 중 손실을 부담할 주체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귀하가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당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단,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 ②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르는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양수도 당시의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가맹비는 면제하기로 한다.
- ③ 전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사는 양도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④ 귀하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당사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⑤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의 사망시 그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 의사를 당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뇌 운영관리사 3급 이상의 소지자에 한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승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당사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 절차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대리행사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를 가맹점의 점장으로 고용하여 교육 및 경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점장을 맡은 제3자는 반드시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르는 교육비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업무위탁	불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당사와 협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비고
○ 일반인에게 뇌교육, 기체조, 호흡, 명상 등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	본사 담당팀 041-620-6905
○ 동일업종의 가맹본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단월드]의 영업시간은 제한하지 않으나, 영업일수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일수	비고
주5일, 월20일 이상	본사 담당팀 / 041-620-6905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당사는 해지절차에 의하여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즉시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자율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서비스 취급 여부, 점포의 청결 및 정돈 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는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점포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결과를 쌍방이 서명 기록하여 당사가 보관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단월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광고	브랜드광고 (가맹점 모집 광고포함)	가맹점사업자 부담 외 전액	광고 시행 전월 매출액의 0.5%	광고 세부계획 → 귀하에게 통지 → 분기를 기준으로 광고비 부담내역을 귀하에게 해당 분기의 전달 말일까지 통지 → 귀하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당사에 납입 → 광고시행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 광고 포함)				
	가맹점	100%	없음	해당없음	

	모집광고				
지역단위 광고 및 개별광고	매출 활성화	없음	100%	지역단위광고시 해당 지역의 가맹점사업자가 개별광고시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지역단위 및 개별 광고
판촉	매출 활성화	없음	100%	원칙적으로 귀사의 부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당사에서 비금전적인 부문에 대하여 지원은 가능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 또는 가맹점사업자들이 단독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시행하는 경우, 영상물, 인쇄물, 기사 등의 모든 제작물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서면으로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귀하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 가맹계약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제19조(경업금지 의무) 및 제33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0~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평수 : 99㎡, 단위: 만원)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총(40~45)일	[9~10쪽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1일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가맹점 10개 현황 문서 제공	1일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3~7일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1일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	-
가맹금 예치	- 보험증권 교부 받음 -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지급	1일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1일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1일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7~14일	-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14일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사정, 교육이수 정도, 가맹점포의 여건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1)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2)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 분쟁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 및 점포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종료(계약의 해자영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본사 담당팀 041-620-6905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됨)	본사 담당팀 041-620-6905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단월드]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나,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단월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단월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만원)	비고
센터운영 직무교육 (단센터 CEO SCHOOL)	9박 10일 (1일 8시간, 9.5일 : 76시간)	1, 500(VAT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정기교육	매 월 1회(교육시 책정)	무료	교통비·식비 등의 제반비용은 귀하 부담
특별교육	협의 진행	무료	
부정기적 교육	협의 진행	협의	-
보수교육	협의 진행	1인 1일 기준 10(VAT 별도)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당사에서 정한 교육 및 훈련을 불참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영업지원의 중단 및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귀하의 가맹점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강원	(주)단월드 동해센터	강원 동해 천곡 1078-15 삼성빌딩5층
2		(주)단월드 강릉센터	강원 강릉시 옥가로 5 (옥천동)
3		(주)단월드 원주센터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408, 506 (단구동,광장빌딩제5층)
4		(주)단월드춘천센터	강원 춘천시 후석로 326, 6층 604호(후평동,엠타워)
5	경기	(주)단월드 화정센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길 57(화정동 6층)
6		(주)단월드 단무도일산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50(주엽동,자유프라자 301,302호)
7		(주)단월드 일산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1406(주엽동)
8		(주)단월드 구리센터	경기 구리시 경춘로 223(인창동, 6층 603호)
9		(주)단월드 단무도분당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7(금곡동)
10		(주)단월드 미금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8 ,603 (구미동 ,분당프라자)
11		(주)단월드 서현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 (서현동, 야베스빌딩 706,707,70)
12		(주)단월드 야탑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2(야탑동)
13		(주)단월드 영통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06, 309(영통동,미네시티프라자 3)
14		(주)단월드 천천동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35번길 38(천천동, 로얄프라자 6)
15		(주)단월드 안성센터	경기 안성시 중앙로366(석정동 5층)
16		(주)단월드 단무도평촌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27번길 50(호계동)
17		(주)단월드 안양1번가센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안양동,메세포스빌 808,809호)
18		(주)단월드 오산센터	경기 오산시 성호대로121,501(오산동,월드타워)
19		(주)단월드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회룡로137(호원동,거원프라자4층 404호)
20		(주)단월드 이천센터	경기 이천시 영창로 178(창전동)
21		(주)단월드 평택센터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267(비전동 3층)
22		(주)단월드 동탄센터	경기 화성시 탄반석로204(반송동,동탄제일프라자 902~903호)
23		(주)단월드 마두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72 그랜드프라자 708호
24		(주)단월드 과천센터	경기 과천시 새솔막길 10-17 행진빌딩 6층 (중앙동)
25		(주)단월드 산본센터	경기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6-7롯데프라자 803호
26		(주)단월드 김포한강센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3, 1102(장기동,신한프라자)
27		(주)단월드 상동센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79,701(상동,부천상동수석프라자)
28		(주)단월드 단무도부천센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90(상동,메가플러스 420호)
29		(주)단월드 고잔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81BYC안산사옥 6층

30		(주)단월드 평촌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5,상가-601(비산동,동안프라자빌딩)
31		(주)단월드 수지센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27(풍덕천동)
32		(주)단월드 파주센터	경기 파주시 문화로 92 (금촌동,4층)
33		(주)단월드 거제센터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867 (고현동, 신림빌딩 3층)
34	경남	(주)단월드 내외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중앙로 75(내동, 내외빌딩 5층)
35		(주)단월드 밀양센터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270(삼문동) 상공회의소 2층
36		(주)단월드 양산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49세정에스타 7층
37		(주)단월드 진주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284(신안동)
38		(주)단월드 마산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38 (양덕동, 7층)
39		(주)단월드 대방동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124번길 5-3(대방동, 경남빌딩5층)
40		(주)단월드 창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46(상남동)
41		(주)단월드 단무도창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153번길 10701호
42		(주)단월드 명곡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83 (봉곡동,청마빌딩 5층)
43		(주)단월드 진해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87, 501(석동, 와이존빌딩)
44		(주)단월드 통영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로 8 (무전동)
45	경북	(주)단월드 경산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63(정평동,6층)
46		(주)단월드 경주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05 (동부동)
47		(주)단월드 구미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로 538층
48		(주)단월드 김천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로 74 (평화동,3층)
49		(주)단월드 문경센터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582층
50		(주)단월드 상주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삼백로 78 (무양동)
51		(주)단월드 안동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264 (태화동,4층)
52		(주)단월드 영주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350번길 2 (영주동,구한신금고3층)
53		(주)단월드 대이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140 (대잠동,프라임코아6층)
54		(주)단월드 두호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곡로 20, 4층(두호동, 대진빌딩)
55	광주	(주)단월드 첨단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04 (월계동,에이스타워B/D5층5-1)
56		(주)단월드 진월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701번길 2,403(진월동,넥스타워)
57		(주)단월드 동광주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79-1(우산동)
58		(주)단월드 서구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평화로 79, 5층 508,509호(지평동, 팔복빌딩)
59	대구	(주)단월드 상인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31 (상인동)

60		(주)단월드 월배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75 (진천동)
61		(주)단월드 성서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18 (이곡동)
62		(주)단월드 방촌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229 (방촌동)
63		(주)단월드 칠곡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06 (태전동, 7층)
64		(주)단월드 신세계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142 (침산동,5층)
65		(주)단월드 범어동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0, 4 (범어동, 대성빌딩)
66		(주)단월드 시지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218 (신매동)
67		(주)단월드 수성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11(수성동2가, 광덕빌딩5층)
68		(주)단월드 단무도대구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10 (남산동)
69		(주)단월드 송촌센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36번길 36(송촌동, 2층)
70		(주)단월드 단무도대전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29, 503(둔산동, 5층)
71	대전	(주)단월드 둔산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4,801(둔산동, 아베스빌딩8층)
72		(주)단월드 월평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20 202호(월평동, 청원빌딩)
73		(주)단월드 서대전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80
74		(주)단월드 온천장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온천장로 131(장전동,7층)
75		(주)단월드 금정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841번길 19 (구서동,7층)
76		(주)단월드 기장센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109(현대프라자4층)
77		(주)단월드 대연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33 (대연동)
78		(주)단월드 동래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57(온천동)
79	부산	(주)단월드 단무도부산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3 (범천동, 6층)
80		(주)단월드 부암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36, 한양빌딩 4층
81		(주)단월드 사직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20, 우리빌딩 7층
82		(주)단월드 하단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442 (당리동)
83		(주)단월드 다대포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547(다대동) 5층
84		(주)단월드 영도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98, 301(대교동2가,모닝아일랜드제3층)
85		(주)단월드 강남구센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8길8(대치동)
86		(주)단월드 명일센터	서울 강동구 동남로 75길 13-15(명일동)
87	서울	(주)단월드 둔촌센터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35(성내동, 동부빌딩 2층)
88		(주)단월드 강서센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257 (내발산동,은현빌딩3층)
89		(주)단월드 관악구센터	서울 관악구 관악로203(봉천동,옥토빌딩 7층)
90		(주)단월드 구의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3(자양동, 현대하이엘 305호 ~306호)

			호 ~306호)
91		(주)단월드 신도림센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59길 8,611(신도림동,태영프라자)
92		(주)단월드 성북센터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15(동소문동 6가, 4층)
93		(주)단월드 양천구센터	서울 양천구 오목로322(목동,보성빌딩 6층)
94		(주)단월드 여의도센터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602 (여의도동, 백상빌딩)
95		(주)단월드 경복궁센터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2길 (적선동, 외2필지 5층 501호)
96		(주)단월드 단무도안국센터	서울 종로구북촌로 (재동,2층)
97		(주)단월드 광화문센터	서울 중구 무교로32,6(무교동, 효령빌딩4층)
98		(주)단월드 덕수궁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1, 세게빌딩 5-6층
99		(주)단월드 수유센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317(수유동,덕산빌딩 4층)
100		(주)단월드 상계센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521(상계동, 정일빌딩3층)
101		(주)단월드 공릉센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85(공릉동)샘병원빌딩 3층
102		(주)단월드 마들센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32(상계동)거북빌딩 5층
102		(주)단월드 창동센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67길 2 (창동, 한국빌딩4층)
104		(주)단월드 이수센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71 (사당동) 2층 202호(사당동) 2층 202호
105		(주)단월드 공덕센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9(도화동)
106		(주)단월드 홍제센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홍제빌딩 4층
107		(주)단월드 서초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8 현대빌딩 2층
108		(주)단월드 잠실센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10 (송파동)
109		(주)단월드 연신내센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874연신빌딩 5층
110		(주)단월드 왕십리센터	서울 중구 난계로 159(황학동 4층)
111	세종	(주)단월드 세종아름센터	세종 보듬3로 95해피라운3동 601
112		(주)단월드 울산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4(신정동)
113	울산	(주)단월드 대송센터	울산광역시 동구 대학길 40-14층
114		(주)단월드 북구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40 (상안동, 지팍프라자 3층8호)
115		(주)단월드 중구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76(반구동,3층)
116		(주)단월드 주안센터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33, 석바위VIP클리닉센터 803호
117		(주)단월드 논현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583, 중앙프라자 802호
118	인천	(주)단월드 부평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 창성빌딩 8층
119		(주)단월드 검단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8. 한윤메디칼 503호
120		(주)단월드 송도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송로 122(송도동,송도프라자 604,605)

121	전남	(주)단월드 순천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충효로 109 (조례동,태양B/D3층)
122		(주)단월드 여수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9(학동)
123	전북	(주)단월드 군산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50 (수송동)
124		(주)단월드 익산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040 (영등동)
125		(주)단월드 인후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89 (인후동1가, 5층)
126		(주)단월드 효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62 (효자동1가, 285-5)
127		(주)단월드 정읍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132 (수성동)
128	제주	(주)단월드 서귀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69(서귀동),201호
129		(주)단월드 일도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99(일도이동)
130		(주)단월드 노형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9 (노형동)
131	충남	(주)단월드 서산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91-1(동문동)
132		(주)단월드 아산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3 (온천동)
133		(주)단월드 불당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 33길 24803호
134		(주)단월드 충무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75(쌍용동 494-20)
135	충북	(주)단월드 제천센터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11, 702 (청전동, 장안빌딩2층)
136		(주)단월드 오창센터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로 27409호
137		(주)단월드 용암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5 (용암동)
138		(주)단월드 율랑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08(율랑동) 재경빌딩2층
139		(주)단월드 가경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5(가경동) 501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3년 8개월	8,627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50,243	당사의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의 근거는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프랜차이즈팀(041-620-690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희망자 보관용)

본인은 『단월드』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 _____ 년 월 일
2. 정보공개서를 마지막으로 등록한 날 : _____ 년 월 일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①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④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⑦교육·훈련프로그램
4.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5.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 (인)	수령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	-----------------------------

----- (절취선)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본부 보관용)

본인은 『단월드』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 _____ 년 월 일
2. 정보공개서를 마지막으로 등록한 날 : _____ 년 월 일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①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④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⑦교육·훈련프로그램
4.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5.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 (인)	수령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	-----------------------------